5. 工業配置 및 工場設立에 關한 法律 施行令中 改正令

大統領令 第14,822號 1995. 12. 7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4호중 "영도구 봉래동 및 청학동"을 "영도구 봉래동·청학동 및 서구 암남동"으로 한다.

제5조 제2호 단서를 삭제하고, 동조 제3호중 "공단용지의 매각"을 "공단용지의 매각·임대"로 한다.

제7조 제1항중 "상공자원부"장관과 건설부장관"을 "통상산업부장관과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고, 동조 제2항중 "상공자원부장관과 건설부장관"을 "통상산업부장관과 건설교통부장관"으로,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을 "특별시장·광역시장"으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기준초과용지의 산출) ①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초과용지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기준초과용지=공장용지면적-(공장입지기준면적+예비면적)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입지기준면적인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공장입지기준면적=공장건축면적×(1/기준공장면적율)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면적은 다음 각호의 면적으로 한다.

1. 제3조·제4조(제4호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제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역에 소재한 공장의 경우에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면적. 다만, 공장입지기준면적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면적이 3천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천 제곱미터를 예비면적으로 한다.
2. 제1호외의 지역에 소재한 공장의 경우에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면적

제17조 제5호중 "중소기업진흥법"을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5조 제2항 본문중 "설치하는 것을 말

한다"를 "설치하는 경우로서 공장건축면적이 증가되는 것을 말한다"로 하고, 동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26조 제2호 나목중 "중소기업진흥법 제14조"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로 한다.

제17조의 2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아파트형 공장의 신설·증설 및 당해 아파트형 공장안에 입주할 수 있는 공장의 신설·증설

   가.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및 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외의 지역에서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업종을 영위하는 공장(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공장에 한한다)을 유치하기 위한 아파트형공장

   나. 공업단지 및 공업지역안의 아파트형공장

3. 제26조 제3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행위

제27조의 3 제1호 및 제3호중 "신설·증설 또는 이전"을 각각 "신설"로 한다.

제35조 제2호중 "중소기업진흥법 제14조"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로 하고, 동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단위별 수탁기업체협의회가 구성된 위탁기업체

제44조의 2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해외공업단지를 관리하고자 하는 자는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4조의 4 제3항 전단중 "상공자원부장관"을 "통상산업부장관"으로 하고, 동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관리위탁의 기간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1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국유의 토지 또는 공장 등을 당해 목적사업에 이용할 때까지로 정할 수 있다.

제49조 제2항중 "상공자원부령"을 "통상산업부령"으로 하고, 동항에 단서 및 각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 제3항 중 "제2항"을 "제2항 본문"으로, "상공자원부령"을 "통상산업부령"으로 하고, 동조 제4항중 "제2항"을 "제2항 본문"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분신청자가 추천한 자를 양도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처분신청자가 별도의 법인(합작법인을 포함한다)을 설립하여 입주하고자

하는 경우

2. 처분신청자의 공장과 인접하여 일련의 제조공정을 이루는 공장의 설립이 필요한 경우
3. 미분양된 공단용지가 있는 등 관리기관이 양도할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1조 제1항 제2호중 "2분의 1"을 "2분의 1(아파트형공장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창업보육센터의 경우에는 관리기관과의 입주계약에서 정하는 비율)"로 한다.

제59조 제1항 본문중 "상공자원부장관"을 "통상산업부장관"으로 하고, 동항 제6호를 삭제하며, 동조 제2항 본문중 "상공자원부장관"을 "통상산업부장관"으로, "위탁"을 "위임 또는 위탁"으로 하고, 동항에 제4호 내지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석문국가공업단지에 대한 관리업무는 다음과 같이 위임 또는 위탁한다.
   가. 공단용지의 매각업무는 충청남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나. 가목외의 관리업무는 서부지역공업단지관리공단에게 위탁한다.
5. 북평국가공업단지에 대한 관리업무는 한국수출산업공단에게 위탁한다.
6. 명지녹산국가공업단지에 대한 관리업무는 부산광역시장에게, 대불국가공업단지에 대한 관리업무는 전라남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제2조 제1항 제2호, 제10조 제2항, 제12조의 2 제3항, 제19조 제1항, 제20조 제1항, 제22조 제1항, 제29조 제1항 제2호, 제30조 제2항, 제36조 제1항 본문·단서 및 제2항, 제38조 제1호, 제39조 제1항 본문, 제42조 제1항 및 제3항, 제44조의 3 제3항 및 제4항, 제45조 제1항 본문, 제47조 제1항, 제48조의 2 제1항 단서,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제51조 제2항, 제5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제58조 제3항, 제60조 제4항 중 "상공자원부령"을 각각 "통상산업부령"으로 한다.

제6조 제2항 제5호, 제8조 제1항 및 제2항, 제9조 제1항, 제10조 제2항 및 제3항, 제11조 제1항 및 제2항, 제28조 제1항 및 제3항, 제30조 제1항 및 제2항,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33조 제1항 및 제2항, 제36조 제2항, 제44조 제1항 본문·제2항 및 제3항, 제44조의 2 제1항 제2호 및 제3항, 제44조의 3 제1항 본문·제3항 및 제4항, 제44조의 4 제2항, 제44조의 5 제1항·제2항 본문·제3항 및 제5항, 제60조 제1항 내지 제3항중 "상공자원부장관"을 각각 "통상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44조의 5 제2항 본문 및 제5항중 "재무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14315호 공업배치 및 공장설

립에 관한 법률시행령중 개정령 부칙 제3조 제2항 제1호중 "관계법령"을 "이 영 시행전에 관계법령"으로 하고, 동항 제2호중 "도시계획법"을 "이 영 시행전에 도시계획법"으로 하며, 동항에 제3호 내지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공장증설을 위하여 이 영 시행전에 산림훼손·농지전용기타 토지의 형질변경에 관한 허가·면허 등을 받았거나 신고를 한 경우의 그 허가·면허 등을 받았거나 신고를 한 범위안에서의 증설
4. 공장증설계획의 이행을 조건으로 이 영 시행전에 공장증설허가를 받은 경우의 당해 조건에 따른 증설
5. 이 영 시행전에 정부 또는 정부출연기관과 고속전철차량공급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당해 고속전철차량의 제작을 위하여 필요한 증설

대통령령 제14315호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중 개정령 부칙 제5조 제1항중 "자연보전지역안에 있는 기존공장"을 "자연보전지역안에서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을 위하여 이 영 시행전에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신설 또는 증설을 할 수 있으며, 당해 지역안에 있는 기존공장"으로 한다.

[별표 1] 내지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4]를 삭제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4조 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성장관리지역에서 제외되는 지역에서 이 영 시행전에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신설·증설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것은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신설·증설에 관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과밀억제지역안에서의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이전이 허용되는 경우(제26조 관련)

1. 공업단지	가. 중소기업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 나. 공해업종의 이전집단화를 위하여 지정된 공업단지에 입주하는 주물·도금등 공해업종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 다. 폐업한 기존공장을 양도받아 동일한 규모 및 업종으로 입주하는 공장의 신설 라. 공장의 이전(대기업의 경우에는 동일 공업단지안에서의 이전으로서 공장건축면적이 기존공장 건축면적과 당해공장이 증설 가능한 면적을 합산한 범위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마. 정기간행물의 등록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일간신문의 발행을 위한 공장의 신설 및 증설 바. 공업지역 및 기타지역에서 허용되는 행위
2. 공업지역	가. 도시형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공장의 신설 및 증설(신설 및 증설결과의 공장건축면적이 3천 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나. 기존공장의 증설(증설되는 공장건축면적이 3천 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다. 기타지역에 있는 중소기업공장의 공업지역으로서의 이전(공장건축면적이 기존공장건축면적의 2배 이내 또는 기존공장건축면적과 이전전 지역에서 당해공장이 증설가능한 면적을 합산한 범위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또는 공업지역 상호간의 이전(공장건축면적이 기존공장건축면적과 이전전 지역에서 당해공장이 증설가능한 면적을 합산한 범위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라. 기타지역에서 허용되는 행위
3. 기타지역	가. 다음에 해당하는 공장(이하 "현지근린공장"이라 한다)의 신설 및 증설(신설 및 증설결과의 공장건축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또는 기존공장의 증설(증설되는 공장건축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1) 농·수·축·임산물가공처리 및 그 부산물을 이용한 유기질비료 또는 사료를 제조하기 위한 공장으로서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업종의 공장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산업으로서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업종의 공장 및 동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제품을 생산하는 공장

(3) 공업발전법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또는 기술개발촉진법 제18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성과 및 국가인증을 획득한 신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공장

(4) 당해 지역에서 생산되는 원자재를 주원료로 하고 그 지역안에서 특화육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도지사가 추천한 공장

(5) 의류제조업, 얼음제조업, 인쇄·출판제조업을 영위하는 공장

나.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건축자재업종의 공장으로서 시·도지사가 건축자재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추천하는 공장의 신설 및 증설(신설 및 증설결과의 공장건축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또는 기존공장의 증설(증설되는 공장건축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라. 도시형업종중 첨단기술의 발전 및 산업구조고도화를 위하여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업종(이하 "첨단업종"이라 한다)의 기존공장의 증설(증설되는 공장건축면적이 3천 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엔 한한다)

마. 도시형업종 또는 첨단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인 기존공장의 기타 지역 상호간의 이전(공장건축면적이 기존공장건축면적과 이전전 지역에서 당해공장이 증설가능한 면적을 합산한 범위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바. 당해 지역에서 신설이 허용되는 업종을 영위하기 위한 기존공장의 증설(증설되는 면적이 신설이 허용되는 공장건축면적의 범위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사. 농림수산부장관이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수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축산물공판장안에 설치하는 도축 및 가공용시설의 신설 및 증설(신설 및 증설결과의 공장건축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아. 정기간행물의 등록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일간신문의 발행을 위한 공장의 신설 및 증설(신설 및 증설결과의 공장건축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비고]

1. 공업단지는 법 제2조 제7호의 공업단지(중소기업협동화사업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협동화단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도시계획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으로 조성된 도시계획공업단지로 한다.
2. 공업지역은 도시계획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지역(도시계획법상 공업지역에 준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지역을 포함한다) 및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준도시지역중 시설용지지구로 한다.
3. 기타지역은 공업단지, 공업지역외의 지역으로 한다.
4.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한다.
5. 대기업은 중소기업외의 기업으로 한다.
6. 기존공장은 대통령령 제14135호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중 개정령의 시행일(1994. 7. 4) 현재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공장으로 한다.
7. 기존공장의 건축면적은 대통령령 제14315호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중 개정령의 시행일(1994. 7. 4) 이전에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신고(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은 것은 기존공장의 건축면적으로 본다.
8. 증설이 허용되는 면적을 산정함에 있어서 2회 이상에 걸쳐 증설을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설되는 면적을 합한 것으로 한다.
9. 위표의 제1호(공업단지) 다목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폐업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업신고일부터 1년이 경과된 기존공장으로 하며, 사실상 폐업한 기존공장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휴업신고일부터 1년이 경과된 것 및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 신청후 3월이 경과한 기존공장은 이를 폐업한 기존공장으로 본다.

[별표2]

성장관리지역안에서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이전이 허용되는 경우(제27조 관련)

1. 공업단지	가. 중소기업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 나. 공해업종의 이전집단화를 위하여 지정된 공업단지에 입주하는 염색·피혁·도금 등 공해업종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 다. 대기업공장의 신설 및 증설(아산국가공업단지에 한한다) 라. 공장의 이전(대기업의 경우에는 동일 공업단지안에서의 이전으로서 공장건축면적이 기존공장건축면적과 당해 공장이 증설 가능한 면적을 합산한 범위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마. 폐업한 기존공장을 양도받아 동일한 규모 및 업종으로 입주하는 공장의 신설 바. 정기간행물의 등록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일간신문의 발행을 위한 공장의 신설 및 증설 사. 공업지역 및 기타지역에서 허용되는 행위
2. 공업지역	가. 중소기업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 나. 중소기업공장의 기타지역에서 공업지역으로서의 이전 또는 공업지역 상호간의 이전 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다음의 업종을 영위하는 대기업의 공장자동화, 재무구조개선등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과밀억제지역 또는 자연보전지역에서 성장관리지역의 공업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장 (1) 달리 분류되지 않은 컴퓨터 및 그 주변기기 제조업(30019) (2) 전자변경기제조업(31101) (3) 다이오드·트랜지스터 및 유사반도체제조업(32102) (4) 축전기제조업(32104)

	(5) 유선통신장치제조업(32201) (6) 무선통신장치제조업(32202) (7) 방송수신기 및 기타 영상음향기기제조업(32300) 라. 기타지역에서 허용되는 행위
3. 기타지역	가. 중소기업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 나.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건축자재업종의 공장으로서 시·도지사가 건축자재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추천하는 공장의 신설 및 증설(신설 및 증설결과의 공장건축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다. 다음의 업종을 영위하는 대기업의 기존공장으로서 기술개발의 촉진, 국제경쟁력의 확보 등을 위한 기존공장건축면적의 25퍼센트 범위 이내의 증설(수도권정비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 (1) 달리 분류되지 않은 컴퓨터 및 그 주변기기 제조업(30019) (2) 전자변성기제조업(31103) (3) 다이오드·트랜지스터 및 유사반도체제조업(32102) (4) 축전기제조업(32104) (5) 유선통신장치제조업(32201) (6) 무선통신장치제조업(32202) (7) 방송수신기 및 기타 영상음향기기제조업(32300) (8) 전자집적회로 제조업(32106) (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사진 및 광학기기 제조업(33209) (10) 일반여객 및 화물자동차 제조업(34102) 라. 중소기업공장의 기타지역 상호간의 이전 마. 농림수산부장관이 축산물위생처리법에 의한 도축장의 시설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축용시설과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수산물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축산물공판장안에 설치하는 도축 및 가공시설의 신설 및 증설(신설 및 증설결과의 공장건축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또는 기존시설의 증설(증설되는 공장건축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바. 과밀억제지역 및 자연보전지역에 있는 중소기업공장의 성장관리지역으로의 이전 사. 정기간행물의 등록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일간신문의 발행을 위한 공장의 신설 및 증설(신설 및 증설결과의 공장건축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비고]

1. 공업단지, 공업지역, 기타지역, 중소기업, 대기업, 기존공장, 기존공장의 건축면적, 증설이 허용되는 면적 및 폐업은 별표 1의 비고와 같음
2. 표의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이전을 허용함에 있어서는 성장관리지역의 공업단지로 이전하는 경우를 우선하여 허용할 수 있다.

[별표 3]

자연보전지역안에서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이전이 허용되는 경우(제27조 관련)

1. 공업단지	가. 공업지역 및 기타지역에서 허용되는 행위
2. 공업지역	가. 도시형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공장의 신설 및 증설(신설 및 증설결과의 공장건축면적 3천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나. 중소기업공장의 기타지역에서 공업지역으로의 이전 또는 공업지역 상호간의 이전(공장건축면적이 기존공장건축면적과 이전전 지역에서 당해공장이 증설가능한 면적을 합산한 범위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다. 기타지역에서 허용되는 행위
3. 기타지역	가. 현지근린공장 및 첨단업종공장의 신설 및 증설(신설 및 증설결과의 공장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또는 기존공장의 증설(증설되는 공장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다만, 별표1 제3호 가목(4)에 해당하는 공장의 경우는 통상산업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업종에 한한다.

나.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건축자재업종의 공장으로서 시·도지사가 건축자재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추천하는 공장의 신설 및 증설(신설 및 증설결과의 건축면적 1천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또는 기존공장의 증설(증설되는 공장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다. 도시형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인 기존공장의 증설(증설되는 공장건축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라. 도시형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공장의 기타지역 상호간의 이전(기존공장건축면적과 이전전지역에서 당해공장이 증설가능한 면적을 합산한 범위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마. 농림수산부장관이 축산물위생처리법에 의한 도축장의 통폐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축용시설의 신설 및 증설(신설 및 증설결과의 공장건축면적의 5천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또는 기존시설의 증설(증설되는 건축면적의 5천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바. 양곡관리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곡유통업을 육성하기 위한 미곡종합처리장의 신설 및 증설(신설 및 증설결과의 공장건축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또는 기존처리장의 증설(증설되는 공장건축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사.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및 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외의 지역에서 도시형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공장(수질환경보전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공장에 한한다)의 신설 및 증설(신설 및 증설결과의 공장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아. 산림청장이 산림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산물 종합처리장내의 임산물 가공시설의 신설 및 증설(신설 및 증설결과의 공장건축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자. 당해지역에서 신설이 허용되는 업종을 영위하기 위한 기존공장의 증설(증설되는 면적이 신설이 허용되는 공장건축면적의 범위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비고]

1. 공업단지 공업지역, 기타지역, 중소기업, 대기업, 기존공장, 기존공장의 건축면적, 증설이 허용되는 면적은 별표 1의 비고와 같다.

◇개정이유◇

중소기업의 공장입지에 따른 애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가 마련한 중소기업의 공장입지애로해소 종합대책 및 산업용지공급원활화방안의 주요내용을 법제화하고, 그동안 기업에서 제기된 수도권안에서의 공장설립 제한내용을 일부 완화하여 기업의 경쟁력 확보노력을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공장용지중 과다공장용지에 대하여는 이를 비업무용토지로 보고 강제매각조치를 하는 등 규제를 하는 바, 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공장의 경우 공장입지기준면적의 20퍼센트(종전에는 10퍼센트)까지는 장래의 공장증설용 부지로 인정하여 과다공장용지로 보지 아니하도록 함(영 제14조).

나. 수도권안에서 공장설립이 허용되는 자원재활용 관련 공장의 경우 종전에는 폐자원을 가공처리하는 공장에만 국한하였으나 앞으로는 폐자원을 이용하여 재활용제품을 생산하는 공장까지 설립이 가능하도록 함(영 별표 1 내지 별표 3).

다. 성장관리지역에서 중소기업이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 종전에는 업종 및 규모에 의한 제한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제한을 폐지하여 자유롭게 공장설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성장관리지역에서의 입지규제를 완화함(영 별표 2).

라. 자연보전지역에 있는 공업지역안에서 공장의 신·증설이 허용되는 업종을 종전의 231개 업종에서 모든 도시형업종(337개 업종)으로 조정하는 등 자연보전지역에서의 입지규제를 완화함(영 별표 3). 〈법제처 제공〉